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38
----------	------

2019.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26. 김태수 의원
2. 회부일자 : 2019. 10. 2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12. 18.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수 의원)

1. 제안이유

-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건강,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제2호,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2019.8.6)¹⁾되어,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1)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
- 참고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민감정보와 함께 ‘고유식별정보2)’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19.8.6)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령자, 수급가구 등 주거지원 대상의 실태과악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파악됨. (붙임-2.참조)
- 유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건강관련 민감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령인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것인 바, 향후 주거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건의를 통해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38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1명)

찬 성 자 : 유 용, 최웅식, 김광수, 권영희,
고병국, 정재웅, 강동길, 강대호,
이은주, 양민규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u> <u>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u> <u>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u> <u>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u> <u>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u> <u>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u> <u>있다.</u></p>